



제 432회 국회 (임시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노동이사제 운영의 법적 근거 명확화〉
■ 이훈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360호)

2026. 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노동이사제 운영의 법적 근거 명확화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이훈기의원 등 11인

나. 발의연월일 : 2025. 11. 18.

다. 회부연월일 : 2025. 11. 1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 중 1명을 3년 이상 재직한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이하 “노동이사”라 함)으로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준정부기관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동이사를 선임하여 운영 중임. 그런데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운영을 규정하고 있는 「전파법」에서는 노동이사제 운영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음.

이에 이사 중 1명을 3년 이상 재직한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포함하도록 하여 노동이사제 운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5항).

Ⅲ. 검토의견

1. 노동이사제 운영의 법적 근거 명확화

가. 개정안 주요 내용

- 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임원 구성을 정관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최소한 1명의 이사는 3년 이상 재직 중인 진흥원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 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이하 “노동이사”라 함)으로 하도록 함(안 제66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66조(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① ~ ④ (생략) <u><신설></u>	제66조(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① ~ ④ (현행과 같음) <u>⑤ 진흥원에 원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두며, 원장 이외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이 경우 최소한 1명의 이사는 3년 이상 재직 중인 진흥원 소속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에서 근로자 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말한</u>

⑤ · ⑥ (생략)	다)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⑥ · ⑦ (현행 제5항 및 제6항과 같음)
-------------------	--

나. 검토사항

- 2022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비상임이사 임원 중 1명을 3년 이상 재직한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이하 “노동이사”라 함)으로 두도록 규정하여 노동이사제가 도입되었음.¹⁾
- 현행법에 설립 근거를 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준정부기관에 해당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정관에 따라 11명의 임원 중 비상임이사 1명이 현재 노동이사로 선임되어 있음.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공기업 임원의 임면) ③ 공기업의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이 임명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국공립학교의 교원이 아닌 공무원은 제외한다)
2. 3년 이상 재직한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에서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제26조(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 ③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다른 법령이나 준정부기관의 정관에 따라 당연히 비상임이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하되, 기관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거나 업무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3년 이상 재직한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1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노동이사 선임 현황>

임원 구성	노동이사 현황	선임일자	선임기간
11명/11명 (원장 1, 비상임 이사 9, 비상임 감사 1)	비상임 1명	2024. 3. 5.	2024. 3. 5. - 2026. 3. 4.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12.

- 그런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노동이사제를 의무화하고 있는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직원, 수입액 및 자산규모에 대한 지정기준²⁾을 충족해야 하므로, 현재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더라도 향후 지정기준 미달로 인하여 지정해제가 되는 경우 노동이사제 운영 의무가 사라질 수 있는 불확실성이 존재함.
- 이에 개정안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근거법인 「전파법」에 직접 노동이사제 운영 의무를 규정하여, 노동이사제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2024년 결산 기준 임직원 정원 약 540명, 수입액 1,242억원, 자산 2,150억원을 보유하고 있어³⁾ 준정부기관 지정이 해제될 가능성은 적으나, 개정안과 같이 현행 법에 노동이사제를 규정하면 제도 운영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지정기준)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을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한다.

1. 직원 정원: 300명 이상
2. 수입액(총수입액을 말한다): 200억원 이상
3. 자산규모: 30억원 이상

3) 출처: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노동이사제 관련 규정을 둔 현행의 운영 방식이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관련 정책의 일관성 제고는 물론 국가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한 공공기관 관리정책의 탄력성 등을 고려한 취지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또한 동법에서는 노동이사 1명을 선임하도록 인원을 명확히 규정한 것과 달리 개정안은 최소한 1명의 이사를 노동이사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의 문안상 1명을 초과하여 2명 이상의 노동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제도 확대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음.
- 이 경우, 일반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보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노동이사 선임 의무가 강화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 규모가 더 큰 공기업에도 1명의 노동이사 선임 의무가 있는 것을 감안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규정과 일치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도 운영 근거는 이미 마련되어 있으나, 개별법 차원에서 재차 규정함에 따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면에서 개정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235
